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42호

2026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공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지원코드	근무형태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기간제 근로자 (청사방호)	중부A	일근	1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중부B	교대	3명	
	서특단A	일근	2명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 중구 축항대로 10)
	인천A	일근	2명	인천해양경찰서 (인천 서구 청라루비로 96)
	인천B	교대	3명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121)
	평택A	일근	2명	평택해양경찰서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437-27)
	태안A	일근	2명	태안해양경찰서 (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보령A	일근	2명	보령해양경찰서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지원 불가)

2. 모집인원 및 근무조건

가. (신 분)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자

나. (모집인원) 17명(일근 11명, 교대 6명)

다. (채용기간) 임용(계약)후 1년

구 분	채용기간(예정)
증부청·인천·평택·보령	'26. 9. 1. ~ '27. 8. 31. / 1년
태안	'26. 8. 1. ~ '27. 7. 31. / 1년

※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 종료

라. (근무방법) 일근(주간), 교대근무(3교대)

- (일근) 09:00~18:00(휴게1h), (야간) 18:00~익일 09:00(휴게4h)

※ 기관 사정에 근무시간은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마. (임 금)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급 여 체 계

1. 기 본 급 : 직무등급 2등급 1단계 급여(2026년 기준 2,241,630원)
2. 정액수당 : 급식비 160,000원/월
3. 기 타
 -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실 지급 급여액은 야간수당 등으로 일근 근무자와 교대근무자간 차이가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 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만18세 이상인 자(2008.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치안감 이상)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 요건

구 분	내 용
응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서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

다. 우대요건 세부기준(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6. 22.) / 적극적 서류전형시 적용)

구 분	항 목		내 용																	
우대요건 (60점)	관련분야 근무경력 (50점)	연차별 차등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요건 필수 경력(1년) 제외한 경력부터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근무경력</td> <td>4년이상</td> <td>4년미만 3년이상</td> <td>3년미만 2년이상</td> <td>2년미만 1년이상</td> <td>1년미만</td> </tr> <tr> <td>점수</td>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근무경력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50	45	40	35	30
			근무경력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직무관련 자격증 (10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무도단체는 [붙임] 자료 참고)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유의사항

- ▶ 이력서 상에 기재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채용분야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되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 단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 및 '폐업사실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갈음하되 세부적인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보완하여 증빙
-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 **우대사항 및 가산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기준 및 배점

① 자기소개서(20점), ② 직무수행 계획서(20점), ③ 우대요건(60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50점), 자격증(10점)

- 연차별 차등 배점(응시요건 제외후 경력 4년 이상 : 50점)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5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무도단체는 [참고] 자료 참고): 5점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면접 평정요소

- ①(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 근무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전문지식)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6. 6. 11.(목)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나라일터 게시
원서접수	'26. 6. 11.(목)~6. 22.(월)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접수기간 종료 후 개별 통보 예정
서류전형	'26. 6. 29.(월)	■ 응시자 제출서류 대상 적격여부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6. 30.(화)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나라일터 ※ 면접 시간 및 장소 등 세부 일정 포함
면접시험	'26. 7. 6.(월)~7. 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26. 7. 20.(월)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나라일터
근무시작일	8월~9월	■ 최종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제출(최종합격자)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6. 6. 11.(목) ~ 6. 22.(월) 18:00

나. 접 수 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32-728-8916 / 8716)

※ 우) 22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IB스타워 13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봉투 상단에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응시원서 재중 명기) 또는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가능,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택배·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별지 1호 서식>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 ⑦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부 <별지 7호 서식>
- ⑧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지 8호 서식>
- ⑨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 9호 서식>
- ⑩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 10호 서식>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미기재시 경력 미인정), 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必
※※ 발급기관의 증명서 서식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

- ⑪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⑫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응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서류 등**

- ⑬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반환을 원하는 경우만)

※ 제출서류는 위의 번호 순서대로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계 등을 이용하여 편철, A4크기(210mm×297mm)로 제출

※ 제출서류는 중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서류제출 시 [별지 11호] 서류봉투 겉면 부착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유 의 사 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코드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일근 또는 교대근무를 구분하여 지원코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컷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채용)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응시번호를 발송예정이오니 응시번호를 수신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032-728-8916, 8716)으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별첨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치안감 이상)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별첨 2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방호 업무 ○ 경비업무 지원업무 ○ 민원업무 ○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업무이해력, 안전수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시하는 자세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지식 ○ 시설물 안전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지식 등
------	---

응시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 병역을 필 또는 면제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해양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요건 필수 경력(1년) 제외한 경력부터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margin-top: 10px;"> <thead> <tr> <th>근무경력</th> <th>4년이상</th> <th>4년미만 3년이상</th> <th>3년미만 2년이상</th> <th>2년미만 1년이상</th> <th>1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 	근무경력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50	45	40	35	30
근무경력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 맨 앞장에 첨부

2026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분야 (지원코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채용담당 기재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			

▣ 작성 및 제출 목록(총괄표)

구 분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필수)	
2. 응시원서 (필수)	
3. 자기소개서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필수)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필수)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필수)	
9.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1부(필수)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필수)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1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등본이 아님에 유의) ※ 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2.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당자만) ※ 응시자격 또는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서류 등	
1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여부 란에 “O” 표시
 ※ 위 순서대로 첨부하여 주시고, 좌측상단에 집게로 고정(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2026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 응시원서

1. 인적사항			
지원코드	<input type="checkbox"/> 중부 A <input type="checkbox"/> 중부 B <input type="checkbox"/> 서특단 A <input type="checkbox"/> 인천 A <input type="checkbox"/> 인천 B <input type="checkbox"/> 평택 A <input type="checkbox"/> 태안 A <input type="checkbox"/> 보령 A ※ 지원분야 체크v, 중복 선택 불가	응시번호*	※ 채용담당이 기재
성명	(한글)	병역사항	<input type="checkbox"/> 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한자)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현주소 (거주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복수국적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국적:)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2. 응시자격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경력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2. 우대요건(자격증)

* 지원직무 및 우대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 검정기관

*응시번호는 미기재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현주소 및 연락처(핸드폰)은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접수사항, 면접시험 수험번호 등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통보 예정 〉
 - ③ 복수국적 : 복수 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④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기재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및 지원코드	성명	생년월일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		.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지원동기, 그간의 근무 경력, 성품, 직장구성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 자필을 사용하여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반드시 정자로 자필 서명

<별지 제7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개경쟁채용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사유			
2026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8~9월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확인서)

응시분야	지원코드	성명	생년월일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6. . . .

성명 : (서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 제9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u></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u></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p>	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p>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별지 제11호> *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 발송, 방문접수의 경우에도 해당양식 준용하여 제출

[보내는 사람]

응시분야 [지원코드]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
성 명	
휴 대 폰	

**'26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제출서류는 '26. 6. 11.(목)~6. 22.(월)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소인분에 한함)

[받는 사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3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 (032) 728 - 8916, 8716)

등기 발송증 부착

[참고]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무도자격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국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권투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택견보존회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위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